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4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13.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14145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C 대 274.8㎡ 중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 16. 접수 제1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을 제1호증 등기권리증 3면에 첨부된 부동산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 증여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증인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에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9. 1. 13.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위조등기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서에 증여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증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여계약일인 2009. 1. 13. 이후 30일 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제1심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서울 강남구 G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증여인)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던 사실, 원고 본인이 2008. 11. 11.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 판사 윤경아, 판사 박남천